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871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				상정	소위심사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	2214306	이용우의원 등 10인	2025.11.18.	상정	제43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'26.2.10.)
				소위 심사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6.4.15.)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	2215095	김은혜의원 등 10인	2025.12.11.	상정	제43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12.17.)
				소위 심사	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('26.4.15.)

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(2026. 4. 16.)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「국회법」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가.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(안 제13조).
- 나.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(안 제33조).
- 다.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‘사람’에서 ‘자’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,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(안 제33조의2).
- 라. ‘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’을 ‘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’으로 명확히 하고,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(안 제50조 및 제51조).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”을 “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”으로 한다.

-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·조사업무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.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
2.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
3.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
2.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
3.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
4.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

제33조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현장점검을”을 “현장점검 및 조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로, “점검업무의”를 “점검·조사업무의”로, “공항운영자등에게”를 “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로, “점검결과”를 “점검·조사 결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본문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로, “점검을”을 “점검·조사를”로, “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,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”을 “점검·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, 이유 및 내용”

으로, “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”를 “계획을 점검·조사 대상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점검”을 “점검·조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점검업무”를 “점검·조사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제1항,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”로, “제6항”을 “제8항”으로, “점검을”을 “점검·조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에 따른 점검,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”으로, “지정·운영 및 점검업무”를 “지정·운영, 점검·조사업무”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 중 “사실”을 “사실(이하 이 조에서 “보안사고”라 한다)”로, “사람은”을 “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람의 의사에 반하여”를 “자의 동의 없이”로, “신분을”을 “정보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

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“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”을 “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”으로 한다.

1의2.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

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“제33조제4항에”를 “제33조제6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제33조제3항에”를 “제33조제5항에”로, “점검업무의”를 “점검·조사업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33조(항공보안 감독) 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⑧ ----- 제7항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항공보안 감독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 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

2.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

3.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를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들에게 필요한

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

2.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

3.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

4.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

③ -----

-----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·조사업무를-----

④ -----

-----현장점검 및 조사를-----.

⑤ -----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-----점검·조사업무를-----
-----관계 기관의

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,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-----

-----.

⑥ -----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-----점검·조사 결과-----

-----.

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-----
점검·조사를-----점검·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, 이유 및 내용-----계획을 점검·조사 대상자에게-----
-----.

-----점검·조사-----

-----.

⑧ -----
-----점검·조사업무-----

-----.

⑦ 제1항,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·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의2(항공보안 자율신고)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(이하 이 조에서 “항공보안 자율신고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

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---제8항-----점검·조사를-----

⑩ 제1항에 따른 점검,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-----지정·운영, 점검·조사업무-----

제33조의2(항공보안 자율신고) ① -----

-----사실(이하 이 조에서 “보안사고”라 한다)-----
----자는-----

② -----
-----자의 동의 없
이-----정보를-----

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④·⑤ (생략)

제50조(벌칙) ① ~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·⑦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
제50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2.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

3. (생략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2.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

3. (생략)

⑥ ~ ⑨ (생략)

제5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
1의2.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

2. -----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

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

3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과태료) ① -----

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. (생략)

3.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

4. ~ 8. (생략)

9.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10. · 11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

③ · ④ (생략)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<삭제>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제33조제6항에-----

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3조제5항에-----점검·조사업무의-----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